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8,837,936	8,365,138
일반회계		224,265,189	6,727,956
특별회계		54,572,747	1,637,182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업단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0,646,544	919,3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422,597	522,67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223,947	396,718
	기타특별회계	23,926,203	717,786
	주택사업특별회계	6,600	1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11,691	39,351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209,756	6,29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36,163	19,085
	공업단지특별회계	891,985	26,76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3,189,508	395,68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502,000	45,060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6,147,750	184,433
	기반시설특별회계	30,750	92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69,34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